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수산식품부

## 1. 제안 이유

효율적 과태료 부과를 위해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 및 신설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효율적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 및 신설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 마련(안 제4조, 별표2)

(1)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의무거출금이 폐지되었는데도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시·도지사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토록 권한 위임(안 제4조)

(2) 신설 과태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2)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원의 총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축산업자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한우 : 250명
2. 젖소 : 130명

3. 돼지 : 150명
4. 육계 : 80명
5. 산란계 : 80명
6. 육우 : 80명
7. 말 · 양 · 오리 · 사슴 · 토끼 · 칠면조 · 꿀벌 · 거위 · 메추리 및 꿩 : 각 50명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의 수의 배분기준 등) ①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법 제32조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권한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 칙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선출구별 대의원수 배분기준(제3조제1항관련)

선출구별 대의원수 = (선출구별 축산업자수 ÷ 전체 축산업자수 × 대의원의 총수 × 0.5) + (선출구별 가축사육마리수 ÷ 전체 가축사육마리수 × 대의원 총수 × 0.5)

\*비고 : 선출구별 및 전체 축산업자수와 선출구별 및 전체 가축사육마리수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 의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제2호의 같은 목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에 의한다.
-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기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기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부과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법 제35조 제1항제1호	300	500	700
나.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 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법 제35조 제1항제2호	300	500	700
다. 법 제23조제2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자조금 폐지에 대한 친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 제1항제3호	400	600	900
라. 법 제23조제4항 전단(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 제1항제4호	300	500	700
마.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5조 제1항제5호	500	700	1,000
바.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제2항	100	200	300
사.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기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납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제2항	100	200	300
아.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법 제35조제2항	100	200	300
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35조제2항	100	200	300